

#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 명예훼손의 구제를 중심으로

차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1. 머리말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동시에 동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언론·출판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적인 권리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특히 명예권은 서로 상치될 수 있으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명예란 개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신뢰, 명망, 그리고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사회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재진, 2002b). 이 같은 명예에 대한 손상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바 우리 헌법에서는 그러한 침해를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언론에 의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취재, 보도는 시간을 다투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명예를 세심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기자들이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감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기사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취재를 통해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채 보도를 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불가피하게 생기는 오보로 인한 침해 외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서정우, 2000). 어떤 경우이건 간에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론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언론사의 자율적 해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민·형사 소송에 의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언론사의 자율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권 침해가 법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건수는 1990년대 초에 150건 남짓 되던 것이 그 후 계속 늘어나 98년 이후는 매년 6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 건수도 1980년부터 1989년까지 60여 건 정도였던 것이 이후 10년간은 139건으로 약 2.5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한동원, 2001; 이승선, 2001). 특히 9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21건 정도로 전반에 연평균 6건이던 것에 비해 무려 3.5배의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다(조준원, 2000).

이처럼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신청 및 소송 제기 건수가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언

론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도 용인하던 사회적 풍조가 변하여 이제는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둘째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약화되면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래하였다. 셋째 1980년대 말부터 언론은 강압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화되는 동시에 언론시장이 개방되어 양적으로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보도에 의한 개인적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다. 넷째 아직 우리 언론과 언론인들이 일반적으로 윤리의식이나 준법의식이 약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이재진, 2002참조).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각 해결 방식의 운용 현황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 2. 언론사의 자율적 구제과 개선방향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특수한 위치에서 볼 때, 언론에 의한 명예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록 그 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해결방식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혁의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언론이 외부의 강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언론사의 자율적 해결 방식은 사전예방과 사후처리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 사전예방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사들은 보도에 의해 명예권 침해가 일단 발생한 후에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언론윤리 및 법제 교육을 통해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언론인들은 언론윤리나 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아직도 제도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장치나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언론사는 사내에 신망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중견 언론인을 옴부즈맨(ombudsman)으로 임명하여 기사에 대한 자체 비평을 상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종사자들에게 기사 작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일부 언론사들은 자사 보도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비평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평은 대부분 보도방향이나 기사처리 방식에 대한 비평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도에 있어서의 인격권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상임으로 옴부즈맨을 채용하여 자사 보도 기사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고정칼럼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언론중재 신청이나 명예훼손 소송 제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더구나 손해배상 인용액의 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다수 언론사들이 법조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받거나 기사를 사전에 열람하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

에 나섰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이수형, 2002).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취재보도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취재과정에서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반드시 확인작업을 해야 하고, 둘째 기사작성과정에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신원을 가급적 밝히지 말 것이며, 셋째 인터뷰 기사의 경우 인터뷰 내용을 기자가 삭제하거나 축소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내용이나 원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넷째 초상권과 관련된 것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다(임병국, 1999).

## 사후처리

우리 언론계의 윤리강령은 일반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고 오보의 시정을 약속하고 있다. 1996년에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 작성한 신문윤리강령 제6조는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천요강 제10조 5항에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별 언론사들도 유사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중앙일보의 윤리강령과 세부지침은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으며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오보나 기타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 기사를 내고 관계 당사자가 반론을 요구할 때는 성의 있게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른 언론사들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이 같은 윤리강령에 의거, 보도에 의해 인격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단 제기되면, 그것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해구제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기사에 의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특히 오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언론사는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즉각 정정보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오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일단 오보가 확인되면, 그 사실을 즉각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언론사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공신력 손상을 입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진실보도의 가치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감추려했다가 나중에 진상이 드러난다면 해당 언론사는 진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되어 공신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언론은 정정보도를 내는 데 소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율적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동아일보(독자인권위원회), MBC(시청자주권위원회) 등 일부 중앙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언론피해구제 기구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제도가 아직 모색단계에 있어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ombudsman 제도나 자문변호사 제도와 결합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기사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확대 발전될 수 있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수형, 2002).

## 3.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구제와 개선방향

언론중재제도는 제5공화국 시기의 대표적인 언론악법으로 꼽히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반론권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독일의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언론법의 반론권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론피해구제의 전통적 수단인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권리 행사에 있어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과 무관하게 오로지 보도내용과의 개별적 관련성, 즉 객관적으로 해당 보도로 인해 관련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인격적으로나 재산상으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만 문제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신속하고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을 묻는 가치 혁명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양경승 2001).

이러한 점 때문에 제5공화국 당시에는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인식하는 언론인이나 학자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이러한 오해가 불식되어 이 제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없이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80년대 말 민주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정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서도 채택되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법원보다 이용이 편리한 분쟁해결 제도로서 언론에 관한 분쟁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화해와 절충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제도로 간주된다.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언론피해구제 제도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그 동안 제도 밖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거나 권위 또는 체면을 의식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외면하던 국가기관이나 고위공무원, 심지어 언론사까지도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미법 전통에서와 같이 공적 발언을 위한 기회나 창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직자, 언론인에게 이 같은 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정적 견해가 제기될 수도 있다(성낙인, 2002).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만족스러운 해결 수단이 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지난 1996년의 중재신청인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다시 중재신청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신청인은 60.4%이었지만 나머지 약 40%는 중재신청을 해도 만족스러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언론중재위원회, 1996).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사실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변화는 이미 시도되었는데, 특히 1996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개정 정간물법에 도입된 중재결정제도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피신청인, 즉 언론사들이 합의를 해주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립으로 유도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부터는 합의율이 급격하게 신장되었다. 예컨대 1996년까지 합의율이 대체로 20%대에 머물러 있던 것이 97년 32.9%, 98년 37.5%, 99년 38.1%, 2000년 32.6%, 2001년 34.8%로 최근 5년간 연속 30%를 상회하였다. 반대로 중재불성립 사건은 96년까지

20-30%대를 유지하던 것이 9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는 20.0%로 다시 약간 상승했다(한동원 2001; 언론중재위원회 2002).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개선으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가 안고 있는 결함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으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현행 관련법령이 민법, 형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구제수단별로, 그리고 정간물법과 방송법 등 언론매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통합한 새로운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지난 200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양삼승(2000)은 이러한 논의들을 수렴하여 언론피해구제의 단일법령 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둘째 그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 장치로서 중재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지만, 전심절차의 한계상 모든 분쟁을 중재절차 내에서 최종적,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 제시된 것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관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재절차의 전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경우에 그것을 필수적 전치절차로 규정하며, 또한 중재절차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고 전치절차로서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의 증거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양경승, 2001).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액수의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제소에 앞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중재제도의 취지에 적합치 아니하므로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셋째 직권중재결정을 법규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정간물법 규정에 의하면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소송제기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 소송이 자동으로 제기된 것으로 하는 식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하겠다(한동원, 200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절차에서 분쟁의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심 소송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2심 소송절차로 이행케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내실과 소송절차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중재결정의 50%를 상회하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소송 제기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행 중재제도하에서는 합의 또는 중재결정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게재하지 않은 때도 마땅한 집행방법이 없어 신청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1996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37.5%만이 합의내용대로 즉시 보도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4%나 되었다(언론중재위원회, 1996).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가 합의나 중재결정 사항의 완전한 이행까지 책임을 지고 불이행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한동원, 2001).

다섯째 현행 정간물법에서는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는 신청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사법부 판단과 결정을 첨부

한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중재부의 확인만을 거치도록 하고 바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한동원, 2001).

여섯째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반론보도청구를 위해 방송에 의한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정기간행물에 의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양삼승, 2000). 언론피해구제법(시안)에서는 선거관련 보도에 대해 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사의 입장과 견해를 첨부하여 그 결정사항을 이행토록 하며, 직권중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또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곱째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 중재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전통적인 대중매체들과는 달리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즉 인터넷의 쌍방향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문이나 방송은 전통적인 종이신문이나 지상파/케이블 방송과 같이 대중매체로 간주하여 이들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양삼승, 2000).

그밖에도 중재신청인은 한 번의 불출석으로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언론사에 대해서는 2회의 불출석을 취하로 간주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되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 4. 소송을 통한 구제와 개선방향

미국의 헌법학자 샤우어(Schauer)는 명예훼손법은 각 사회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해결은 각 사회가 명예의 중요성과 언론자유에 두는 사회적·정신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이재진, 2002a 참조). 미국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대체로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명예보다 더 중시하는 것과 달리, 우리 나라와 일본은 프랑스나 독일의 대륙법계 전통을 따라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를 더 중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명예의 침해에 대해 형법과 민법에서 모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언론관련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은 제309조 1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고의성)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조 2항에는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제310조에서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로서 언론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진실성)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공공성)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진실성과 공공성을 판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비록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했으며, 표현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사항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면책할 바 있다. 그리고 공공성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행위자의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그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일 경우 그 평가를 달리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재진, 2002b; 배금자, 2002).

한편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주의 결여와 같은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현실적 악의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보도한 경우, 또는 거짓인지 아닌지 전혀 개의치 않고 보도한 경우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재진(2002a)은 미국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현실적 악의를 구성하는 행위유형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증거의 인멸, 둘째 고의적 조작, 셋째 사실 왜곡, 넷째 부주의한 무시, 다섯째 사적인 감정 의존 등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이 현실적 악의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명예훼손 소송 추이를 보면, 80년대 이전까지는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그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80년대까지 손해배상 인용액이 3,000만원 미만이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3,6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95년 이후에는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언론의 책임을 점차 엄중하게 묻는 경향이 있다.

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조준원, 2000)에 의하면, 원고 유형별로는 전체 139건 가운데 사인이 원고인 경우가 58.4%인 80건, 유명인이 30건(20.4%), 공직자가 12건(8.8%), 일반단체가 11건(8.0%), 기업체 6건(4.3%) 순이었다. 특히 공직자가 소를 제기한 건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 90년대 전체 12건 가운데 무려 8건이 98년과 99년에 제기되었다. 1999-2001년에는 검사들이 때로는 10-22명씩 집단으로 모두 11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상청구 금액도 최저 5억에서 최고 36억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공직자가 원고인 경우 전체 12건 가운데 11건에서 승소하여 승소율은 무려 91.6%에 이르러 사인(75%)이나 유명인(67.6%), 기업체(66.6%), 일반단체(45.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고 유형별로 손해배상 인용액의 규모를 보면, 공직자는 평균 약 5,400만원인데 비해, 유명인은 약 4,190만원, 사인은 1,613만원에 불과하여 우리 법원이 공직자의 명예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공직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인 공공의 이익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공직자들을 기사로 다룰 때 사인들의

경우보다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언론보도에 위협적 효과(chilling effect)를 미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감시라고 하는 근대적 저널리즘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재진, 2002b).

앞에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가 1999년의 결정에서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여 공적 인물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법원의 판례들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배금자, 2002). 예컨대 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하여 검사 22명이 집단으로 MBC방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MBC의 해당 보도가 법조계 전체의 고질적 비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룬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도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한 검사들이 그 보도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해 준 것은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분명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 건수나 손해배상 인용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 역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명예훼손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민주화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늘기는 했어도 일부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보전적 배상에 그치고 징벌적 배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인용액을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준원, 2000).

바람직하기는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폭넓게 용인하는 쪽으로 가되,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언론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 왜곡하거나 기본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무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적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신청과 명예훼손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다. 언론사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언론윤리 및 법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사내에 옴부즈맨이나 자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상시적인 비평과 검토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처럼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권 침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단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론사는 즉각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언론사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사내에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피해구제를 위한 우리의 독특한 제도로서 그 편리성을 인정받아 자리를 확고히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는 그러한 논의가 법제화로 결실

을 맺어 보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때로는 자유로운 보도활동에 위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민주화된 사회에 걸맞게 공직자나 공인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예훼손 판결의 기준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언론자유 남용을 막기 위해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고의적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배금자(2002),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23(2), 22-36.

서정우(2000), “오보의 발생과 대책,”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지방토론회 발표원고.

성낙인(2002),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언론중재, 23(2), 4-21.

양경승(2001),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21(1), 6-16.

양삼승(2000),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2000년도 정기세미나 주제논문집. 49-82.

언론중재위원회(1996),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에 관한 연구.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서울: 나남, 295-327.

이승선(2000),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언론종사자 책임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27호, 82-133.

이재진(2002a),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0)2, 73-110.

이재진(2002b),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 추이 비교-한미일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23(2), 37-51.

임병국(1999), “명예훼손 소송의 실태,” 관훈저널, 71호, 210-220..

조준원(2000), “1990년대 언론관계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4), 33-53.

한동원(2001), “중재신청 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언론중재, 21(1), 29-38.